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3
------	------

2025. 9.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이민옥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9. 8.) 상정, 공청회(생략),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옥 의원)

1. 제안이유

-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임.

-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 이에 작은도서관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독서 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안 제8조)
-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9조)
-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따로 규정함으로써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 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통해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음.
-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2009년 ‘작은도서관진흥법안’ 및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도서관법」의 개정만으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개별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약 3년간 계류 상태에 있었음.
- 그럼에도 국회는 이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했던바, 관련 기본법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음.

- 지난 1월 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또한 개정되었음.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 있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신설된 별도의 사업은 없음.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과 그 밖의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야 하며,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및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은 법정 의무시설에 해당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조성된 작은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에서 서울 지역은 18개 자치구에서 29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되어 약 60여 개관의 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받고 있음¹⁾.

○ 서울시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인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을 통해 자치구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108개관 중 약 1/3 수준인 384개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2022~2024년도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사업예산	추진 실적
2022	560,000	1,121개관 (공립 447, 사립 674) 중 361개관 (공립 172, 사립 189) 지원
2023	782,000	1,121개관 (공립 447, 사립 674) 중 418개관 (공립 219, 사립 199) 지원
2024	782,000	1,108개관 (공립 425, 사립 683) 중 380개관 (공립 201, 사립 179) 지원

○ 이와 같이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위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 자치구 작은도서관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 부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관리·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공공도서관·지자체에 순회사서를 배치하여 순회사서 한 명이 지역 내 작은도서관 2~3개관을 지원함.

- 다만,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임.
- 또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광역 단위보다는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가 관련 사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실제로 2023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을 종료하기도 하였음.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대한 서울시의 해석 및 입장에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작은도서관의 진흥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개정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인력지원,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노력 및 지원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울시는 각 책무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 제정안의 내용

- 동 제정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기능(안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설치 및 운영 지원(안 제6조), 후원의 장려(안 제7조), 종사자 교육(안 제8조), 협력 체계 구축(안 제9조), 포상(안 제10조) 등 10개의 본칙과,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을 규정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동 제정안의 목적 및 각 용어의 뜻이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9조(작은도서관의 기능)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비, 도서관자료 구입 등을 위한 운영비,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비,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8조제2호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도록 함.
- 안 제8조는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끝으로, 안 부칙 제2조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 및 제4장(제28조 및 제29조) 중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라.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이 대체로 관련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광역자치체인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조례로 확인시켜 주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안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서 법령이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자치구에 더 적합한 사업이라는 입장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법 제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신청자로 규정하면서도 시·군·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법 제4조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을 따르도록 한바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자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개정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동 조항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2)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매년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현행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또한 서울시 도서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는바 별도의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지난해 5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

2028)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까지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동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를 예상하여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시 종합계획 수립 현황 >

구 분	기 간 ²⁾	목 표
제1차	2012~2018년도	책 읽는 서울
제2차	2018~2022년도	지식문화도시 서울
제3차	2025~2029년도	성장과 포용의 도서관(심의중)

(3) 설치 및 운영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 대상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바 재원 마련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의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보충적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제 정 안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운영비 및 인력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비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2024. 12. 개정 이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수립 주기를 명기하지 않아 차수별로 계획 대상 기간이 상이하였음.

- 관련 사업 중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은 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 평가에 따라 1~3백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³⁾하고 있음.
 -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비 및 자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에는 5억 8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6개 자치구 신규 도서관에 9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따라서 안 제6조의 각호가 규정한 사업은 대부분 기시행 중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으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은 개소당 평균 지원액이 10년 이상 2백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 현재까지 인력 지원 사업은 편성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동 조항은 향후 관련 사업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특히,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의 경우 2023년 서울시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사례가 있어 안 제6조는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 최근 실시한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심의결과’에서 심의 결과가 ‘지속’이었다는 점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심의결과(2024회계연도) >

부서명	세부사업명	자체평가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결과
		지속여부	평가등급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지속	보통	지속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속	보통	지속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 다만, 제안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서울시 차원의 인력 지원 사업은 편성된 적이 없었던바 동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신설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개요 >

- (목적)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기반 구축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 (기간) 2025년 1월 ~ 12월 * 순회사서 활동 기간(2월~11월, 10개월)
- (규모) 순회사서 180명
- (내용) 참여 공공도서관·지자체에 순회사서를 배치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 순회사서 한 명이 지역 내 작은도서관 2~3개관 운영 지원
 - 사업 담당자, 순회사서 대상 사전교육 및 권역별·최종 워크숍 개최

- 추가 사항으로, 최근 개정된 법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명기한 것을 근거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공간에서 마을 단위 문화 향유의 장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동 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중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화하는 것으로, 중복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마. 종합검토

- 작은도서관은 법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에 관해서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가 분산되어 있어 각각 법령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달라 법령이 오히려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지방 분권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 밀착형 SOC 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의 존재 가치와 활성화의 필요성은 가중되었으며, 지난 1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보다 강화되었음.
- 또한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제정안을 무리한 입법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작은도서관의 진흥은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지역 단위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바 개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관 본연의 목표인 독서문화 진흥을 넘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7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민옥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신복자,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유정희,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임
-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 이에 작은도서관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안 제8조)
-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9조)
-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운영비 및 인력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비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후원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지원, 종사자 교육 관련 내용 등 일부 비용 수반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어 입법취지 문의 및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서울도서관) 각종 문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지원사업(안 제6조)의 경우 **기추진¹⁾**하고 있고, 새로이 규정된 사안 또한 기존 자원 및 시스템을 활용²⁾(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할 경우 서울시 재정 지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주요예산(안 제6조 관련)

- ① 서울시 문화본부 2025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787,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식으로 391개관에 2,000천원씩 지원(자료구입비, 운영비 등)
- ② 서울시 문화본부 2025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 588,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형식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료구입비 지원

2) [기존 자원 적극활용 가정] 향후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예산 한정성 및 재정투입 효율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가정할 시 해당 규정에 따른 재정지출 가능성은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안 제7조) 캠페인 형식(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추진 시 비용소요 미미
- ② (안 제8조) 서울도서관에서 기추진 중인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용할 경우 종사자 교육관련 추가재정소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③ (안 제9조) 도서관 간 도서 및 자료 등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경우 해당규정에 “시스템 구축”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국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차원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국가단위의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붙임 참고)를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작은도서관 269개소는 책이음 서비스에 기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스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다만, 도서관 별로 사정이 달라 해당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도 있음)
- ④ (안 제10조)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 책이음서비스란?

- 하나의 통합 이용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전국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책이음 통합센터로부터 회원정보 반입만으로 도서의 대출, 반납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확대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 책이음서비스는 코라스(KOLAS III)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관리시스템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 * 단, KOLASIII이외의 자료관리시스템이 책이음 참여를 원할 경우 책이음 참여도서관 MW 구축 및 개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책이음 참여도서관 MW와의 연계(MW 통신 및 연계 기능 개발, MW SQL 설정파일의 SQL 변경 등)를 진행하여야 함.



<책이음 브랜드 이미지 및 샘플 이용증>

< 참고 > 책이음서비스 구성도

